

인증심사 수수료(제38조 관련)

1. 기준수수료

가.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

인증심사 종 류	구 분	수 수 료	비 고	
최초·갱신 인증심사	종 업 원 수	10명 미만	67,360원	○별표 13에 따른 최초·갱신·중간인증심사 대상 분사무소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수수료와는 별도로 심사대상 분사무소마다 실제 심사소요시간당(1인 기준) 16,84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사무소의 인증심사수수료는 사업장의 인증심사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.
		10명 이상~ 30명 미만	84,200원	
		30명 이상~ 100명 미만	101,040원	
		100명 이상~ 500명 미만	134,720원	
		500명 이상~ 1,000명 미만	202,080원	
		1,000명 이상	실제 소요된 심사 일수(1인 기준) × 134,720원	
		중 간 인증심사	종 업 원 수	
10명 이상~ 30명 미만	67,360원			
30명 이상~ 100명 미만	84,200원			
100명 이상~ 500명 미만	101,040원			
500명 이상~ 1,000명 미만	134,720원			
1,000명 이상	실제 소요된 심사 일수(1인 기준) × 134,720원			
임시 인증심사				수수료 : 50,520원

나.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

인증심사종류	선박의 종류	기본수수료	비 고
최 초 · 갱 신 인 증 심 사	제1군에 속하는 선박	67,360원	○선박인증심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에 톤수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	제2군에 속하는 선박	84,200원	
중간인증심사	제1군에 속하는 선박	50,520원	
	제2군에 속하는 선박	67,360원	
임시인증심사	기본수수료: 50,520원		
<p>○ 선박종류에 의한 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군: 유조선 · 화학제품운반선 · 가스운반선 · 산적화물선 · 고속화물선 및 기타화물선 - 제2군: 여객선 · 고속여객선 및 이동식해양구조물 <p>○ 톤수계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톤수 500톤 미만: 0.8 - 총톤수 500톤 이상 1,600톤 미만: 0.9 - 총톤수 1,600톤 이상: 1 			

2. 공휴일 심사 및 국외 심사의 수수료

가. 공휴일에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나. 국외에서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※ 비고

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심사에 종사하는 자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